

<조선일보>고양 차이나타운 재개 발판 마련(2006.9.27)

법원 “계약 12월까지 연장하라” 결정

토지 매입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무산 위기에 처했던 고양 차이나타운 건설사업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7월 25일자 A12면 참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31 단독 이훈재 판사는 26일 차이나타운 건설사업 계약자로 선정됐다 해지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계약기간을 12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하라”고 조정결정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계약이 해지되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중도금과 잔금 등 부지매입대금 337억 원을 못 내 계약이 해지됐던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연말까지 대금을 납입할 경우 계약사 지위를 유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현재 (주)삼호가 시공사로, 우리은행이 금융 조달자로 선정돼 있다”며 “기한 내에 미납대금을 납부한 뒤, 이르면 11월 말쯤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이나타운 사업은 2010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지원시설 2만 1000평 부지에 차이나 스트리트와 고급호텔(650실 규모), 중국식 정원 등 상업·문화공간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이 가운데 차이나 스트리트 부지 4000평의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달 계약이 해지됐었다.

남승우기자 futurist@chosun.com

